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 청소년수련 동인증제 운영규정

제정 2008. 4. 3  
개정 2008. 12. 4  
개정 2009. 11. 6  
개정 2010. 5. 12  
개정 2010. 9. 8  
개정 2010. 12. 21  
개정 2011. 5. 12  
개정 2013. 7. 3  
개정 2013. 9. 4  
개정 2014. 7. 21

## 1

- 「 ( " " ) ( " )  
" ) · ( " " )  
( " " ) .
1. " " 36 .  
2. " " 1 3 1 2 2 .  
3. " " .  
4. " " .  
5. ' ' .  
28 . < 2014.7.21.>  
6. " "( " " ) .
- ① 「 6 ( " )  
" ) 6 35 2  
( " " ) .

②

2014.7.21.>

2

1. 36 5 6

2. 36 2

3. 36 3

4. 37 1 2

5. 37 3

6. 21 2

7. 22

8. 15 4

2014.7.21.>

9. 1 8

①

② 19 2 1 2

( " " )

. < 2014.7.21.>

③ 1

2

② 1 , , , .  
 . < 2014.7.21.>

4

< 2014.7.21.>

9 ( ) ①

10

1

. < 2014.7.21.>

②

2

7

③

④

3

10 ( ) ①

4

2

. < 2014.7.21.>

②

③

3

①

1

②

, , 15 3

4

. < 2014.7.21.>

③

5

· < 2014.7.21.>

1

1.

2.

3.

2

4.

5.

6. 25

2

< 2014.7.21.>

①

2

, 3

4

② 1

15

③ 1

④ 1

15

· < 2014.7.21.>

①

14

15 4

②

15

2

20

③ 1

2

6

< 2014.7.21.>

①

( " " )

②

- 1.
- 2.
- 3.
- 4.
- 5.
- 6.

15 3

. < 2014.7.21.>

- 1.
- 2.
- 3.
- 4.
- 5.
- 6.

①

15 3

4

. < 2014.7.21.>

②

1

20%

- 1. 「 」
- 2.
- 3.

①

1.

5

40

2.

, 60 , 6 .

②

70%

70%

③

7

①

8

②

1

③

1

9

<

2014.7.21.>

①

②

1

15

15

1.

2.

3.

4.

5.

6.

7.

8.



⑤ 36 3

< 2014.7.21.>

① 26 3 6 2 4

② 1

③ 1

< 2014.7.21.>

① 15 4 5

' ) 31

( ' .

1.

2.

3.

② 1

12

1.

2.

3.

4.

③ 1

17

32

④

33

1.

2.

3. 26 2 2

< 2014.7.21.>

①

34

②

1 1

< 2014.7.21.>

①

10

45

( “ ”

)

. < 2014.7.21.>

②

1

. < 2014.7.21.>

③

2

① 36 21

7 . < 2014.7.21.>

②

③

④

⑤

①

25

②

1

③

8

① 36 21

27

. < 2014.7.21.>

②

1

1

2

. < 2014.7.21.>

③ 2

32

. <

2014.7.21.>

④

10

,

11

12

⑦

9

⑧

⑨ 8

3

. < 2014.7.21>

①

30

②

1

1.

2. 1/3

< 2014.7.21>

①

1.

2.

3.

②

1

1

③

①

32

, 1

. < 2014.7.21>

1.

2.

3.

②

((

1.

2. ,

3.

4.

③

①

- 1.
- 2.
- 3.
- 4.

< 2014.7.21>

5

①

15 2 1

②

45

19

③

< 2014.7.21>

①

18

20

14

② 1

18

③

< 2014.7.21>

①

29

. < 2014.7.21>

② 1

1. 26 2

< 2014.7.21>

2. <2013.7.3.>

3.

4. 43

5.

6.

③

1.

2.

3.

④ 3

11

21

22

7

. < 2014.7.21>

⑤

12, 13

①

40

②

1

23

③ 1

14

④

14

< 2014.7.21>

①

②

③

< 2014.7.21>

①

36 3

② 1

. < 2014.7.21>

③

1

36 3 1 2

. < 2014.7.21>

1.

2.

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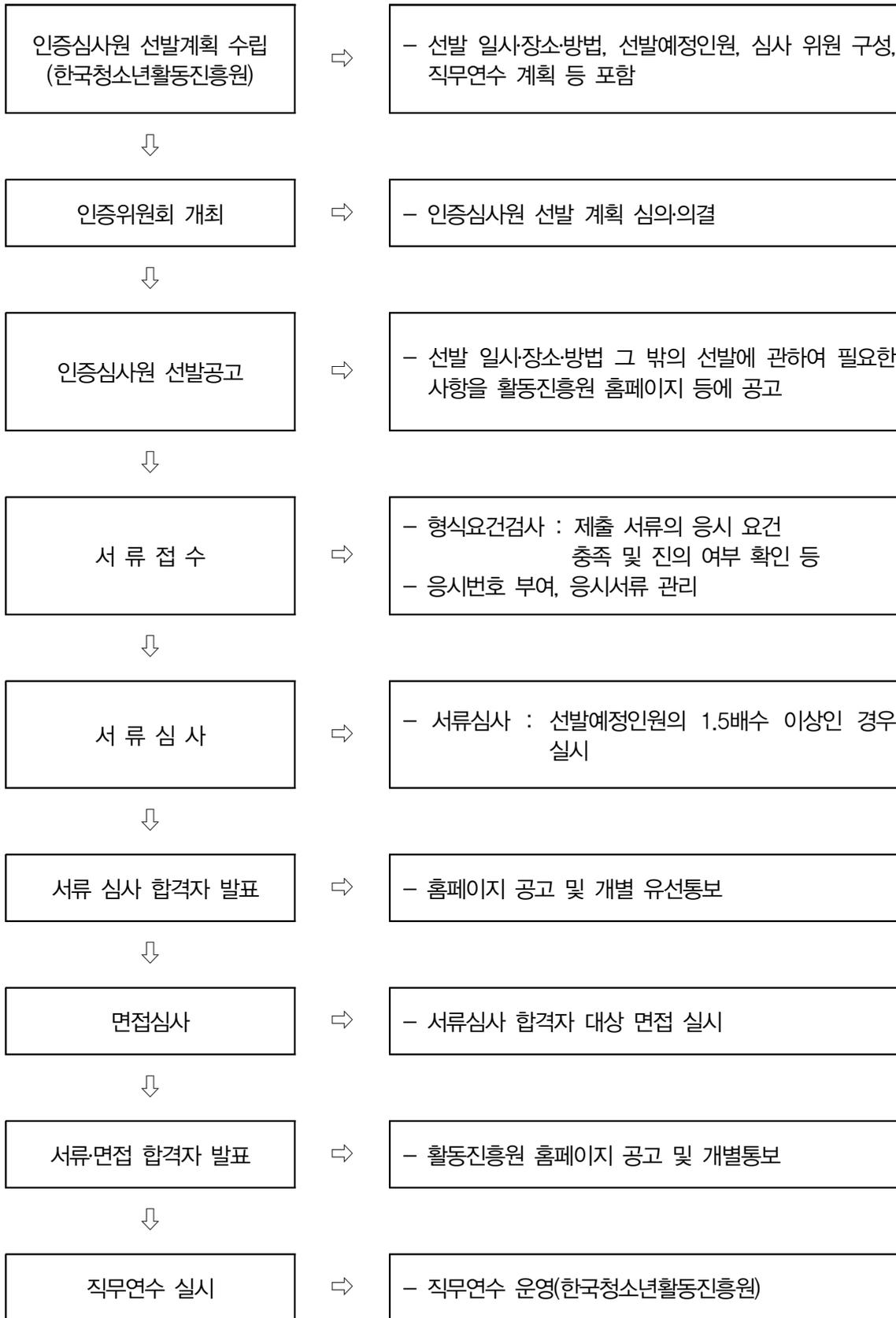
② 1

”

. < 2014.7.21 >

2014 7 22

[별표 1] 인증심사원 선발 절차 - (제11조 관련)



[별표 2] 인증심사원 서류심사 형식요건 검사 기준 - (제14조 관련)

항 목	검사기준		판 정	비 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충족	미충족	미충족 시 탈락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제출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응시원서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시 탈락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진위	허위	허위 판명 시 탈락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와의 일치 여부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시 해당 점수 미반영	
- 응시원서 상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기재	미기재	미기재 시 탈락	

[별표 3] 인증심사원 선발 서류심사 배점기준 - (제14조 관련)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 자격증 소지자	15
	2급 자격증 소지자	13
	3급 자격증 소지자	11
청소년활동분야 실무 경력	11년 이상	16
	9년 이상 11년 미만	13
	7년 이상 9년 미만	11
	5년 이상 7년 미만	9
	3년 이상 5년 미만	7
	1년 이상 3년 미만	5
학 력	박사학위 소지자	9
	석사학위 소지자	6
	학사학위 소지자	4
	전문학사 소지자	3
	고졸자	2
프로그램 개발실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5건 이상	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4건 이상	6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3건 이상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2건 이상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1건 이상	3
청소년활동분야 전문연수경력	5회 이상	3
	3회 이상 4회 이하	2
	1회 이상 2회 이하	1
총 점		50점

[별표 4] 인증심사원 선발 면접심사 배점기준 - (제14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품 성	- 청소년활동의 핵심가치를 알고 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					
	- 인증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인증심사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지 식	- 청소년에 관한 발달과정, 심리, 문화, 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은 갖추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시행목적, 관계법령, 인증처리 절차, 인증요소, 기록 유지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경험과 표현	- 청소년 현장에서의 경력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 말과 글의 표현능력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기 술	- 심사수행을 위한 행정능력은 어느정도 갖추었는가?					
	- 심사와 관련된 심사수행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만 점		100				

[별표 5]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생활평가 기준표 - (제20조 관련)

구 분	감점요소	기준	감점	비 고
-----	------	----	----	-----

연수관리				
------	--	--	--	--

[별표 6]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과제평가 기준표 - (제20조 관련)

영역	평가항목	배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과제 이해도	- 제시된 과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접근 하였는가	5	4	3	2	1
	- 실제 심사 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5	4	3	2	1
논리성	- 제시된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5	4	3	2	1
	- 논리 전개가 체계적인가	5	4	3	2	1
현장성	- 사실에 입각하여 과제를 해결 하였는가	5	4	3	2	1
	- 실제 심사 진행시 적용 가능한가	5	4	3	2	1
창의성	- 과제 해결 과정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5	4	3	2	1
	- 과제 내용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가	5	4	3	2	1
기 타	1. 과제물 제출자는 기본점수 20점 부여 2. 과제물 미제출자는 0점 처리 3. 팀별 실습 및 발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팀원은 동일 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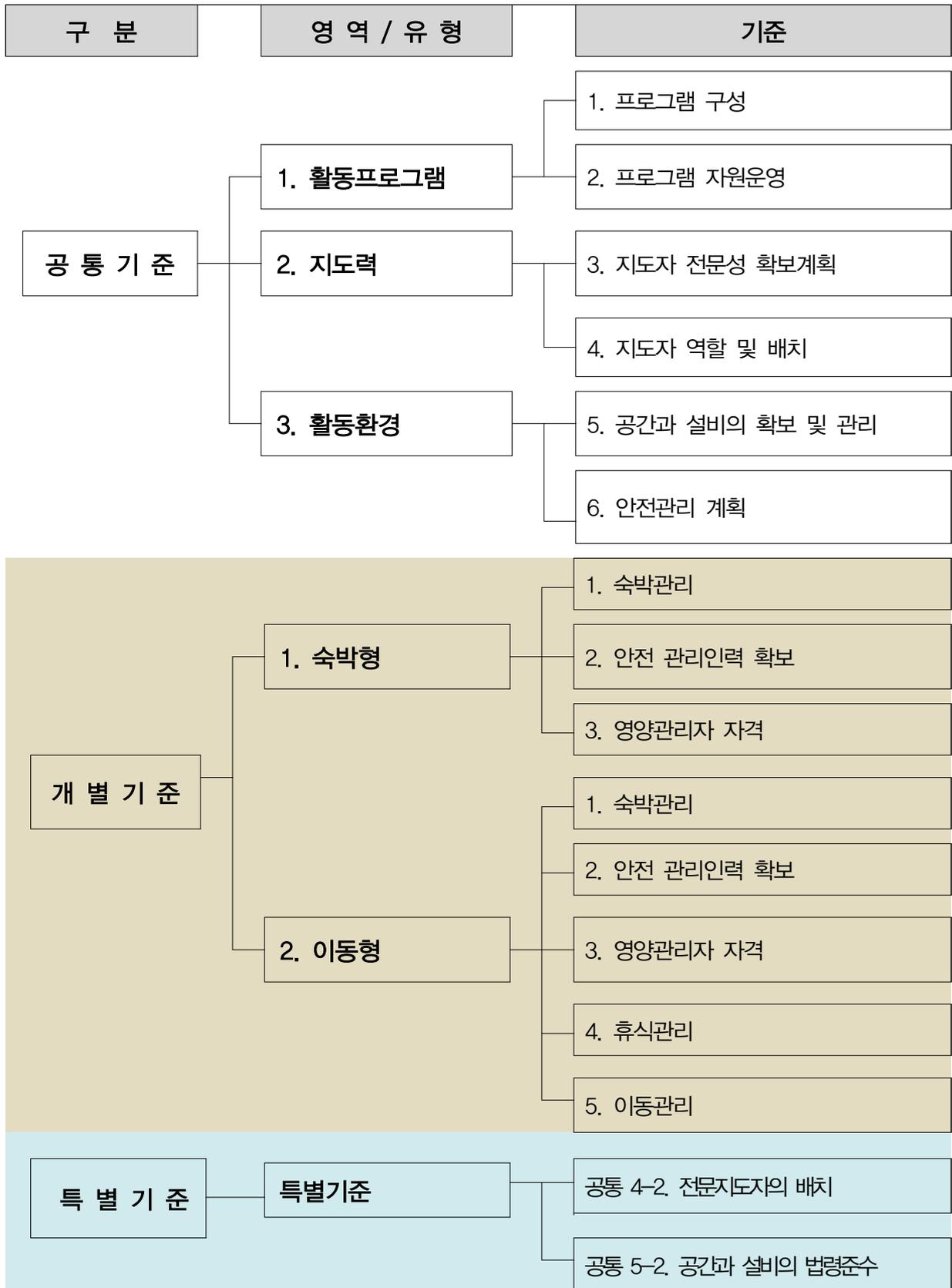
[별표 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 (제28조 관련)

국내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확인요소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국내/해외)	확인요소 (국내/해외)		
인 증 기 준	공통 기준	1.활동프로그램		2	5	인 증 기 준	공통 기준	1.활동프로그램		2/2	7/7	
		2.지도력		2	5			2.지도력		2/2	7/7	
		3.활동환경		2	4			3.활동환경		2/2	4/5	
		소 계		6	14			소 계		6/6	18/19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3	4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3/2	4/3		
			이동형	5	6			이동형	5/4	6/5		
	특별기준				2	2	특별기준				2	2

※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 특별기준은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추가로 적용한다.

□ 인증기준 구성



□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프로그램 구성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라.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 교육 일정 및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p>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라.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 교육 일정 및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p>
2. 프로그램 자원운영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p>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p>

[2] 지도력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3. 지도자 자격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상근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라. 지도자중 해외활동 유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p>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상근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라. 지도자중 해외활동 유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p>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다.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활동운영 형태(전문기관 위탁 또는 컨소시엄 등)와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p>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다.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활동운영 형태(전문기관 위탁 또는 컨소시엄 등)와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p>

[3] 활동환경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p>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p>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단, 사진 및 홍보자료로 증빙 가능)</p>
6. 안전관리 계획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다. 방문국의 국정이 불안한 상황(전쟁, 질병, 분쟁 등)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국과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 개별기준

인 증 기 준	활동유형		확 인 요 소		
	숙박형	이동형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숙박 관리	○	○	-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안전관리인력 확보	○	○	- 참여청소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좌동	좌동
3. 영양관리자 자격	○	○	- 관련법령에 따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삭제]
4. 이동 관리		○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단, 이동계획 및 이동수단 명시)
5. 휴식 관리		○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해외주관 프로그램 경우 탄력적 적용)

□ 특별기준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4-2. 전문지도자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2]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li> </ul>	[ 좌 동 ]	[ 좌 동 ]
5-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등록·허가·관리사항 등이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li> </ul>	[ 좌 동 ]	[ 좌 동 ]

[별표 8] 인증절차 - (제

조건부 인증

인

[별표 9] 인증여부 판단 기준 - (제30조 관련)

1. 인증요소별 평점 적용 기준

가. 0점 = 자료 없음. 인증기준 미달

나. 1점 = 약간의 자료는 있으나, 인증기준 충족에 미흡

다. 2점 = 대부분의 자료 있으며, 인증수준에 도달

라. 3점 = 모든 자료 있으며, 인증기준 충족

2.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 요소에 대해 0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할 수 없다.

[별표 10] 인증심사 과정 - (제34조 관련)

- 심사준비
  - 심사자료 수령 및 제출 자료 확인
  - 인증심사 서약서 제출



- 서류심사
  - 인증심사분석표 작성
  - 서류심사 결과 작성



- 현장방문 (필요시 실시)
  - 인증신청기관 및 활동 현장 방문 확인 및 분석
  - 현장방문 결과 정리 및 작성



- 결과정리
  - 심사결과 분석, 정리 및 기준별 최종 점수 부여



- 결과보고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등 제출(활동진흥원)
  - 인증심사결과 인증위원회 출석·화상 보고/ 질의응답 (필요시)

[별표 11]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절차 (제40조 제4항 관련)

- 이행여부 확인 준비
  - 인증심사자료 수령 및 내용 분석
  - 인증기준별 이행여부 확인 대상 분석



- 이행여부 확인 실시
  - 인증수련활동 실시 현장 방문 실사
  - 지도자, 참여청소년 등 관계자 인터뷰 및 조사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에게 항목별 확인결과 고지
  - (필요 시) 참여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활동진행원으로 통보



- 결과 정리
  - 이행여부 확인 결과보고 자료 정리
  -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심사 완료 7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제출 (활동진행원)
  - 이행여부 확인 결과 인증위원회 출석 보고 (필요시)

[별표 12]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기준 (제40조 제6항 관련)

□ 공통기준

영역	확 인 기 준	확인요소
활동프로그램	1. 대상 및 일정	-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상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2. 자원 및 기자재	- 사용하는 기자재 등 자원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청소년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상태 및 수량이 적합하다.
	3. 평가 및 관리	-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활동기록 등 인증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	4. 전문성 관리	- 운영담당자와 전문 인력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전문지도자는 계획된 수준대로 참여하고 있다.
	5. 배치인력 관리	- 프로그램별 지도자 수는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지도자 교육결과 및 개별 지도자의 숙지수준이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6. 지도역량 관리	- 지도자서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청소년에 대해 강요나 폭력이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준수하고 있다.
활동환경	7. 확보 및 점검	-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활동장소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교육 및 보험	- 참여청소년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전원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생 및 관리	-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개별기준

영역	확 인 기 준	확인요소
숙박/ 이동형	1. 숙박관리	- 참여청소년 인원내 적합한 숙박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 야간생활 지도는 인증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안전 및 영양관리	- 안전관리 담당자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배치된 지도자의 성범죄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적합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동형	3. 이동 및 휴식관리	-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및 지도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

[별표 13]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평점 적용 기준 (제40조 제6항 관련)

○ 확인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그렇지 않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함
보통이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하였으나, 제시된 대안이 인증수준에 도달함
그렇다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함

○ 확인기준에 대한 평점 적용 기준

3점	○ 확인요소가 모두 ‘그렇다’ 이다.
2점	○ 확인요소에 ‘그렇지 않다’ 를 포함하지 않는다.
1점	○ 확인요소에 1개 이상 ‘그렇지 않다’ 를 포함한다.

[별표 14]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판정 기준 - (제41조 관련)

등급	판정기준	조치사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 24점 이상</li> <li>- 숙박형 31점 이상</li> <li>- 이동형 34점 이상</li> </ul> </li> <li>○ 1점 항목 : 없음</li> <li>○ 보완개선사항 :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이행여부 확인 면제 가능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 24점 이상</li> <li>- 숙박형 29점 이상</li> <li>- 이동형 32점 이상</li> </ul> </li> <li>○ 1점 항목 : 없음</li> <li>○ 보완개선사항 : 2건 이내 경미한 사안</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 2년간 이행여부 현장 확인 면제</p>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 18점 이상</li> <li>- 숙박형 22점 이상</li> <li>- 이동형 24점 이상</li> </ul> </li> <li>○ 1점 항목 : 2개 이내</li> <li>○ 보완개선사항 : 3건 이내 경미한 사안</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 1년간 이행여부 현장 확인 면제</p>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점 항목 : 3개 이상</li> <li>○ 보완개선사항 : 4개 이상 ※ 1개 이상의 중대한 보완개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보완·개선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차기 회차 진행 시 이행여부 확인 실시</p>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로 인증사항의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li> <li>○ 요청받은 보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검토</p>

※ 총점 최고점수 - 기본형 27점, 숙박형 33점, 이동형 36점

[별표 15-1]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4번 관련)

실내·외	야외	지도자 자격	비 고
30:1	15:1	○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최소 1명 이상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 활동장소에 따라 참여청소년수가 30명 초과시, 매 20명 단위로 지도자 1명씩 추가 배치

- ※ 실내·외: 집 또는 건물의 안. 지붕 혹은 벽이 있는 장소 및 인증활동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변 (예: 교육장, 천막, 천체관측실, 수련시설의 운동장, 캠프화이어장, 체험장 내 영농체험장 등)
- ※ 야외: 시가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노천.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 혹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활동 공간(예: 공원, 하천, 사적지, 유적지, 시장 등)
- ※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경우라도 수상활동, 스키의 경우 별표 15-2의 배치비율을 준용함.

[별표 15-2]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4-2번 관련)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과정 참여		사전교육 교육대기	지도자 자격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수중	수상			
수상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중	5:1	30:1	○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지도자 전원 수상인명구조 자격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소지자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	10:1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기타	15:1			
산악활동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4시간 이상 야간산행	15:1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장거리 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짚라인, ATV탐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1:1				

※ 일정규모 이상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5-1의 배치기준을 준용함.

[별표 16] 인증심사원 징계 기준 - (제25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분		
	1차	2차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촉된 경우</li> <li>○ 규칙 제15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위촉된 경우</li> <li>○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뇌물을 수수, 요구, 알선한 경우</li> </ul>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분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li> </ul>	자격정지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li> <li>○ 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li> <li>○ 기타 인증위원회가 지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ul>	경고	자격정지	해촉

[별표 17] 인증수련활동 인증사항 변경승인 요청기준 (제39조 관련)

□ 변경요청항목

변경항목	승인기준	
지도자	운영담당자	· 운영담당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재직 확인 시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재직 확인 시
	전문지도자	· 프로그램 변경이 승인되는 경우 관련 전문지도자의 적합한 변경 여부 확인 시
프로그램	· 활동의 목적과 목표, 주요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한 일부 단위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경우	
활동장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될 수 있는 사용여건, 점검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정보	· 동일한 대표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명칭, 주소 등만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변경내역 확인)	
예산	· 물가변동,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사유로 참여청소년의 참가비용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 변경요청 불가능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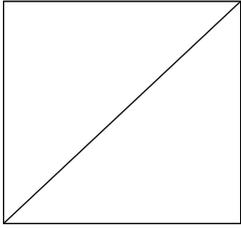
변경항목	세부 내용 및 예시
운영주체	· 위수탁주체의 변경, 사업대표자의 변경(기관 내 인사이동 제외)
목적·일정 등	· 활동목적의 변경 혹은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 활동 일정의 변경 (예. 1박2일 → 2박3일, 1박2일 → 6시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프로그램의 변경
대상연령	· 활동대상의 연령을 바꾸어 운영하려는 경우

□ 운영기관 자율 변경 가능 항목 및 승인기준

변경항목	세부 내용 및 예시
참여청소년 인원	· 인증신청 시 대상인원 이내의 변경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내용은 동일하나 단위프로그램의 운영 순서를 변경 · 인증신청 시 제시한 대체프로그램으로의 변경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요청 사항은 그 사유와 내용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가부 의결

[별지 제1호 서식] - (제9조 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년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안건

제출자	
제출년월일	20 .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회의소집통지서

수 신

20 . .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의 안 :

의 안 번 호	건 명	의결구분
제 호		
제 호		
제 호		

첨부 인증위원회의안

부. 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제 \_\_\_\_\_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의결결과	가·부		가부내역
	가	부	
			별첨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 가 부란에는 가 부별 위원의 수를 구분 기입함.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청 소 년 수 련 활 동 인 증 위 원 회 서 면 결 의 서

수 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20 . . . .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 부의안에 대한 본 위원의 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안 건 명	가·부	
		가	부
제 호			

20 . . . .

위원

(인)





[뒷면]

## 응시자 참고사항

### 1. 응시원서 기재요령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 ② 주 소 : 자택 및 직장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전자우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③ 직장명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명 및 담당업무, 직위를 기재합니다.
- ④ 학 력 : 해당하는 학력 란에 졸업 연월일 출신학교명과 학과 또는 전공을 기재하고, 수학 구분란에 ○표를 합니다. (석박사 졸업의 경우 학위등록번호 기재)
- ⑤ 청소년활동분야경력 : 청소년활동분야 경력은 첨부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실적
  - 인증수련활동 개발 실적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주최후원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나
  - 정부부처, 시도, 국책연구기관, 대학에서 출판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실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⑦ 자격/면허 : 청소년활동 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 기타경력 : 청소년활동분야 전문 연수 경력, 심사 경력, 대학 강의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⑨ 전문분야 : 응시자의 전문분야 (해양활동, 문화체험활동, 국토순례프로그램 등)를 기입합니다.

2.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을 부착 합니다.

3. 접수된 원서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는 형식요건 검사를 거쳐 접수가 완료 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험표는 면접심사 시 접수증 교환 하여 교부합니다.

[2쪽]

1. 수험표는 면접 시 필히 지참 하여야 합니다.
2. 수험표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진(원서와 동일 원판) 1매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면접시험장에서는 응시표를 좌측 가슴에 부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및 접수증〉

수험표		접수증	
제 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제 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응시번호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접수일자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접 수	(인)
소 속		※ 접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 (제15조 관련)

##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	--

성 명		전 화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휴 대 전 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제21조 관련)

##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수료증

제 호

### 수료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연수기간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연수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별지 제8호 서식] - (제22조 제1항 관련)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인증심사원 등록 카드										사 진 (최근 6개월이내) 3cm×4cm			
※															
인적 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직장명					담당업무					직 위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 / 검정고시													
	년 월 일	대학교 과 (졸업·수료·재학·휴학)													
	년 월 일	대학교 (석사, 박사)				대학원 학기 (졸업·수료·재학·휴학)				전공		학위등록번호			
	년 월 일	대학교 (석사, 박사)				대학원 학기 (졸업·수료·재학·휴학)				전공		학위등록번호			
청소년 활동분야 경력	종사기간(연월일)	종사 년, 개월			종사시설·단체·기관명			담당업무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실적	개발 일자	개발 프로그램명								확인기관					
	~														
자격/ 면허	취득일자(연월일)	자격명칭			급류	자격/면허번호			발급기관						
	~														
청소년 활동분야 전문연수 경력	연수기간(연월일)	연수실시기관			연수과목 및 내용					연수시간					
	~														
	~														
인증 심사 경력	접수번호	프로그램명					심사 유형	인증 유무	이행여부 확인결과						
									유지	시정	취소				
인증 심사 관련 상벌 사항	구분	상벌 내용					조치일자		사유						
전문 분야															
특기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 (제22조 제3항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증심사원등록번호 :

귀하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간 :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인증심사분석표

기준번호	심사내용 (제출서류)	심사의견	점수
공 통 기 준	1		
	2		
	3		
	4		
	5		
	6		
개 별 기 준	1		
	2		
	3		
	4		
	5		
특 별 기 준	1		
	2		
합 계			

※ 인증기준별로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발급번호	
------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 증 번 호 : \_\_\_\_\_

운 영 기 관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_\_\_\_\_

활 동 명 : \_\_\_\_\_

주 요 활 동 장 소 : \_\_\_\_\_

인 증 기 간 : \_\_\_\_\_

참 여 대 상 : \_\_\_\_\_

참 여 인 원 : \_\_\_\_\_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8호 서식] - (제37조 관련)

## 인증수련활동의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 (제38조 관련)

접수번호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인증번호	제 호	기관명	
	활동명			
신청내용	인증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변경내용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간략히 기술하고, 변경 전·후 비교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별첨		
위와 같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완 · 개선 요청서

심사 개요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심 사 기 간		심 사 장 소	
보완개선 요청사항	1.			
	2.			
	3.			
	4.			
	5.			
	6.			
	7.			
	8.			
	9.			
	...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개선을 요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b></p>				



발급번호	제 호
------	-----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활동기간:

① 활동내용

1	일자(기간)		시간(일수)	
	인증수련활동명	[ 호]		
	활동영역			
	기관명			
	활동내용			
2	일자(기간)		시간(일수)	
	인증수련활동명	[ 호]		
	활동영역			
	기관명			
	활동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지도자 승낙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자 우 편	
전 화		휴 대 전 화	
신 청 기 관 명			
활 동 명			
지도기간 및 시간			
지 도 역 할	※ 활동 운영 시 실제 담당할 역할을 요약 기술		

본인은 귀 기관에서 인증 신청한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지도자,  보조지도자로 해당 지도 역할을 담당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성 명 : (인)

인 증 신 청 기 관 명

### 인증심사 현장 방문 보고서

프 로 그 램 개 요	접 수 번 호			
	프 로 그 램 명			
	기 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현 장 방 문 일				
심 사 결 과	심 사 내 용	▶ 중점내용		
		▶ 관계자 면담결과		
		▶ 심사종합결과		
	기 타 의 견	▶		

위와 같이 접수번호 (0000-000) 건의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 (제45조 관련)

청소년활동 참여 기록			
이 름		생 년 월 일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운 영 기 관 명		활 동 장 소	
활동일자(기간)		시 간 ( 일 수 )	
활 동 영 역		만 족 도	
프로그램 개요			
담 당 자		기 관 연 락 처	
▶ 활동참여 동기			
▶ 활동내용 및 소감			
▶ 활동 이미지			
▶ 지도자 의견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자체 점검표

인증번호	제	호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활동장소										
평가점수 (총괄)	기 확 본 인	실시일자		통보	변경사항		확인	활동기록		등재
영역 확 인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개별기준1		개별기준2	
※ 이행여부 확인 자체점검표 작성방법 참조하여 상,중,하로 기재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을 자체 점검하였음. 년    월    일 운영담당자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 3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별지 제32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제 호

##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

안 전 교 육 위 탁 기 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별지 제33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  지정취소 ] 통지서  
[  업무정지 ]

기 관 명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사유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 지정취소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지정취소 된 경우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를 200 년 월 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가까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제 호	확인
<b>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b>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과정명 :	
수 료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료 시 간 : 총        시간	
위 사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4에 따른 「 과 정 명 」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안전교육 위탁기관장 [인]</b>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일부개정]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본조신설 2013.5.28.]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본조신설 2014.1.2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

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2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본조신설 2014.1.2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전문개정 2014.1.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 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인증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 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 6]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9 3 )**

1.

2.

1

3.

				1	2
1.		20	2	3	
		1 1			
2.		20	2	2	3
		1 1			
3.		20	2	2	3
		1 2			
4.		20	2	2	3
2		1 3			
	2 2				
3					
5.	17	20	2	2	3
		1 4			

[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15 2 2 )**

	( , ), (4 )
	10K m
	( Zip- line), ATV )

[ 8]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5 7 2 )**

1.

2.

1

3.

5

36 3 1

2

		1	2	3
1.	36 3 1 1			
2.	36		3	
1	3 1 2			
3.	36 3 1 3	3	6	